

국제대학 대외협력위원회 규정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수원대학교 국제대학 대외협력위원회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 대외협력위원회는 국제대학의 장·단기 발전을 위한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국제대학을 위한 장·단기 발전을 위한 전략
2.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진로 전반에 걸친 자문
3.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수월성 방안

② 위원회는 전항의 사항을 국제대학 학장에게 건의한다.

제4조(구성) 이 위원회의 위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효율적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10인 내외의 외부인사로 구성하며, 국제대학 학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원) ①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수원대학교 국제대학의 직원으로 국제대학 학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회의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제9조(회의록)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국제대학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규정개정) 이 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제대학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